

# 종로소방서



수신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인 김명구 귀하  
(03177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경유)  
제목 처분사전통지서(서울역사박\*\*)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처분 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 있을 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자체점검 지적사항 조치명령서						
당사자	성명(명칭)	서울역사박물관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신문로2가)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소방시설 미비사항(지적내역)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불임참조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종로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은철
		주소	종로구 종로1길 28(수송동)		전화번호	02)733-2117	
	전자우편 주소	go119@seoul.go.kr			팩스번호	02)730-6119	
	제출기한		2018년 10월 2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점검결과 지적 내역서

소방대상물 상호(명칭)	서울역사박물관	관계인	관장 강 흥 빈
소방대상물의 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5		
점검결과	시설별 지적내역서 참조		
점검자 (직위 및 성명)	소방시설관리사 안 병 윤		

#### 각 설비별 점검결과

소화기구	지적내역서 참조
경보설비	점검결과 이상없음
소화설비	점검결과 이상없음
피난설비	점검결과 이상없음
소화용수설비	해당사항 없음
소화활동설비	점검결과 이상없음
화재취약시설	점검결과 이상없음
그 밖의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 이상없음

